##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76

발의연월일: 2020. 9. 11.

발 의 자:서영교・이상직・김민철

강준현 • 박성준 • 송기헌

이성만 · 양정숙 · 김승원

윤미향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8개의 소방본부만이 인명구조견을 운용하고 있어 보급 확대가 요청되고 있음.

선진 외국과 같이 화재조사견, 산악구조견, 수난구조견 등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견에 대한 활용도의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법령상 소방견은 인명구조견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관련규정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국민안전 서비스의향상을 위해 법률적 근거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법령상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 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 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 견의 양성·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명시함 으로써 소방견에 대한 위상과 활용성을 강화하고 소방특수목적견인 1 19구조견의 활동범위 확장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로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9호·10호 및 제12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119구조견"이란 재난사고현장 등에서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견을 말한다.
- 10.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 등에서 제9호의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각종 재난사고현장 등에서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으로 한다)의 양성·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핸들러)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보급기관 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운영 및 양성보급 기관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9. "119구조견"이란 재난사고현
	장 등에서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
	하는 견을 말한다.
	10.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
	등에서 제9호의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
	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
	위조직을 말한다.
<u>&lt;신 설&gt;</u>	제12조의2(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
	장은 각종 재난사고현장 등에
	서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
	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보
	급 및 구조견 운용자(핸들러)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
	<u>성·보급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u>

<u>한다.</u>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19 구조견대의 편성·운영 및 양성 보급기관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